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5. 4. 17.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찬 성 자 : 169인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대해,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중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안의 적용례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삭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u><단서 신설></u>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 -----. ----- -----.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 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 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u><신설></u>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 서의 선출일과 대법원장의 지 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 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⑥ 제4항 및 제5항----- ----- ----- -----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략) <u><신 설></u>	----- ----- -----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u>
--	---